

대학정보화위원회규정

공포 제2026-3호(개정 2026. 7. 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안대학교 대학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장안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정보화 및 사이버보안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26. 7. 24.)

1. 학내 종합정보전산망 구축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 연구, 학사 및 일반행정 전산화에 관한 사항
3. 학술정보 전산화 계획에 관한 사항
4. 본교의 사이버보안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26. 7. 24.)
5. 사이버보안 관련 규정·지침의 제정 및 중요 개정에 관한 사항<신설 2026. 7. 24.>
6. 클라우드·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주요 정보시스템 도입의 보안성 심사에 관한 사항<신설 2026. 7. 24.>
7. 사이버보안 위협평가 및 자체 진단·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신설 2026. 7. 24.>
8. 중대 침해사고 조사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신설 2026. 7. 24.>
9. 외부 위탁·용역사업의 보안 요구사항에 관한 사항<신설 2026. 7. 24.>
10. 사이버보안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신설 2026. 7. 24.>
11. 그 밖의 전산 및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2026. 7. 24.>

제3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하며, 정보전산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위원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을 겸임한다.(개정 2026. 7. 24.)

② 위원은 전임교원 및 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 7. 24.)

③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와 서면회의로 구분한다.<신설 2026. 7. 24.>

②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안전이 발생한 때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26. 7. 24.)

③ 서면회의는 위원에게 안전을 송부하여 의견을 회신받는 방법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신과 회신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6. 7. 24.>

④ 대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개정 2026. 7. 24.)

제7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회의의 경우 위원의 회신문서 또는 결재문서로 회의록을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6. 7. 24.)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총장의 보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총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신설 2026. 7. 24.>

제7조의2(보안성 심사)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보안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도입
2. 인공지능(AI) 시스템 도입
3. 사물인터넷(IoT) 기기 도입
4.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구축·변경
5. 주요 정보시스템의 신설·변경
6. 중대 침해사고 발생에 따른 주요 보안대책의 수립·변경
7. 그 밖에 정보보안담당관이 보안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안성 심사의 절차 및 서식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26. 7. 24.]

제8조(보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6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